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3월 5일, 김광성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4년 3월 13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3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광성 의원)

가. 제안이유

-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농촌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농촌 발전을 장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안 제5조)
 -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농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 소프트웨어 지원 등
- 지원 제한 등(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1부.

[붙임 1]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3. 14.)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김광성 의원
- 제안일자 : 2024. 3. 5.
- 회부일자 : 2024. 3. 13.
- 상정일자 : 2024. 3. 14.

2. 제안이유

-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농촌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농촌 발전을 장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안 제5조)
 -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농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 소프트웨어 지원 등
- 지원 제한 등(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서 지자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력 육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농업을 이끌어 나갈 가업승계 농업인을 지원하여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미래 농업 인재로 양성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5조(사업)에서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함.
 - ※ 지원사업: ①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② 농업 창업 자금 지원, ③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④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안 제7조(지원제한 등)는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하고, 규제 사유 발생 시 지원을 취소하고 금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함.

5. 종합검토의견

- 관내 가업승계 농업인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지자체 고유사무를 규정하는 것이고 입법 취지가
합당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입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2]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김 광 성 의원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38
----------	-----

발의연월일: 2024년 3월 5일

발 의 자: 김광성 의원

찬 성 자: 이창열, 남진삼, 박춘희 의원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며 농촌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지원계획(안 제4조)

다. 사업(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2024. 1. 15. ~ 2024. 2. 3. (20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2023. 12. 27. ~ 2024. 1. 11. (15일간), 아래표 참조.

조례안(의회안)	검토안(농정과)	사유	의회의견
<p>제2조(정의)</p> <p>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p> <p>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u>49세 이하의</u> 사람을 말한다.</p> <p>5. <u>“가업승계 예정 농업인”</u>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을 <u>확약한 49세 이하의</u> 사람을 말한다.</p>	<p>○ 가업승계 활성화라는 조례 목적에 부합한 연령 기준 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연령 기준인 49세 이하</u> 준용 - 타 지자체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54건 검토 결과 대부분의 조례안에서 해당 지자체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와 연령 기준 동일 사용 	<p>○ <미수용> 원안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는 청년농을 위한 조례안이 아닌, 고령화 사회에 부합하고 은퇴 후 가업승계 농업인 유입의 장려 등 연령 기준에 제한없이 가업승계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임. -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지자체 입법례는 29여개로, 각 지자체 실정과 입법취지에 맞게 조례 제정. - 연령 기준을 49세 이하로 할 경우, 「<u>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u>」와 지원연령 및 지원사업이 유사하게 되어 중복으로 인한 사업의 비효율성 야기.
<p>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u>가업승계 농업인과 가업승계 예정 농업인(이하 “가업승계 농업인 등”이라 한다)</u>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 가업승계 예정 농업인 조항 추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3년 이하 농업에 종사하였다도 <u>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을 확약한</u>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 필요 - 타 지자체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검토 결과 대부분의 조례안에서 가업승계 예정 농업인도 지원하는 조항 존재 	<p>○ <미수용> 원안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입법례 중 가업승계 <u>예정 농업인</u> 확약에 관한 조문이 있는 곳은 <u>봉화군</u> 한 곳. - 농업기간은 중도포기없이 <u>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증되어야 될</u> 기간으로 <u>사료됨</u>.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평창군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인구의 유출을 막고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 고취하여 가업승계 활성화 및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방향 및 목표
2. 창업·경영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농촌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2. 농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사업
3.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4.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 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의회의 심의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평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2. 7. 5.]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5조(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2. 농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사업
3.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4.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 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
연락처	(033) 330 - 2506